

# 2026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2026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3월 6일

동 백 3 동 장



## 1 채용개요

채용분야	채용인원	근무지	채용방법	담당업무
기간제근로자 (청사 청소)	1명	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(중동 1106)	공개경쟁 채용	- 청사 내부 청소 및 환경정화 - 화장실 소모품 비치 및 관리 - 쓰레기 분리수거 및 운반 등

## 2 근로조건

- 근로기간 : 2026. 4. 1. ~ 12. 31.
- ※ 근로기간은 예산 및 업무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근무태만 등 더 이상 고용이 계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 발생 시 해고할 수 있음
- 신 분 : 기간제근로자
- 근로시간 : 주5일(월~금), 1일 5시간(07:00~12:30, 휴게시간 30분 포함)
- 보 수
  - 59,650원/일 (2026년 용인시 생활임금 11,930원 \* 5시간) (월급제)
  - 4대보험 가입(해당 시) ※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
- 직원복지 : 4대보험 가입, 명절휴가비
- 기타사항은 「용인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」, 「근로기준법」에 준함

## □ 자격기준

○ 응시연령 :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

※ 단,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으로서 근무예정일인 2026. 4. 1 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 우선 선발

○ 거주지 : 공고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

(동 기간 중 말소·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)

○ 자격요건 : 신체 건강하고 청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

○ 결격사유

##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##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예시 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※ 결격사유가 추후에 확인된 경우,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가점사항

구 분		부가점수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%
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
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
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 호대상자	

## 4 채용방법

- 1차(서류전형) : 채용 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등 심사  
2차(면접시험) :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
※ 서류전형 검토 후 적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면접
- 재공고
  - 선발인원이 아래와 같을 경우, 원서접수일 및 시험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
 
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
    -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
-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
  - 최종합격자 결정 :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
  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  - 추가합격자 결정 :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○ 제출서류

**[필수사항]**

- [별표1] 응시원서 1부
- [별표2] 입사지원서 1부
- [별표3] 자기소개서 1부
- [별표4] 자격요건 검증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- [별표5]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(확인서)
-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부 (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)

**[선택사항]**

- [별표6]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- 자격증(사본), 경력증명서(원본) 1부(해당자에 한함)  
: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(발행기관 직인 날인) 제출  
: 이력서 상에 기재한 모든 경력은 경력증명서 첨부 시 인정
- 채용신체검사서 1부(채용 시에 한하며, 제출 결과,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,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함)

○ 기타사항

-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, 가점사항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**5 채용일정**

구분	일정	비고
모집공고 및 원서접수	2026. 3. 6.(금) ~ 3. 15.(일)	9일간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3. 17.(화)	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면접시험	2026. 3. 20.(금)	
최종합격자 발표	2026. 3. 23.(월)	

- 접수기간 : 2026. 3. 6.(금) ~ 3. 15.(일)
-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(yjlove00h@korea.kr) 제출  
2026. 3. 15.(일) 18:00까지 도착분만 인정/팩스접수 불가
- 접수장소 :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
(9:00~18:00, 방문 접수 시 주말·공휴일 제외)

## 6 기타사항

### □ 채용서류 반환 관련

-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는 「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붙임6]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 가능
  - ※ 다만,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종 채용 합격자,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
-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확정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이며,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
### □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세부사항은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(☎031-6193-6217)으로 문의 바랍니다.